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11. 18 선고 2021가단10508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양보라, 이환권, 허지선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기준

변 론 종 결 2021. 10. 14.

판 결 선 고 2021. 11. 1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분의 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E 사이에 2019. 12.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들은 E에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와 2020. 1. 17. 접수 제410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E은 (주)F에 대하여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주)F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후 E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소608796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2. 16. 위 법원으로부터 ‘E은 원고에게 9,113,697원 및 그 중 2,877,071원에 대하여 2016.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6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원고의 E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을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라 한다).

나. E의 배우자 G는 2019. 12. 23. 사망하였고(이하 망 G를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공동상속인들로 배우자인 E과 자녀인 피고들이 있다.

다.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19. 12. 23.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들이 각 1/2 지분씩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20. 1. 17. 접수 제4105호로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2019. 1. 1. 및 2020. 1.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24,000,000원이다(갑 제5호증).

마. E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본인 소유 부동산이 없었고, 그 외 별다른 적극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상태인 E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인 3/7 지분을 포기하고, 피고들에게 해당 지분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의 사해 의사와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E이 망인 및 피고들과 함께 거주하지 않아 E의 채무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가 원고에게 이 사건 피보전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E이 신용불량에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던 상황에서 본인 명의의 통장이 없어 부득이 일당 또는 급여를 자녀인 피고 D 명의로 받아 이 중 E의 부탁을 받은 피고 D가 원고에게 입금하는 과정에서 피고 D 명의가 표시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들은 E이 20년 가까이 직업 없이 지내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E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3/14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과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E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영철

(별지)

부동산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15층 아파트

1층 893.5016㎡

2층 893.5016㎡

3층 893.5016㎡

4층 893.5016㎡

5층 893.5016㎡

6층 893.5016㎡

7층 893.5016㎡

8층 893.5016㎡

9층 893.5016㎡

10층 893.5016㎡

11층 893.5016㎡

12층 893.5016㎡

13층 893.5016㎡

14층 893.5016㎡

15층 893.501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109.8386㎡

대지권의 목적연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 37151.6㎡

대지권의종류 : 1.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37151.6분의 55.4592

